

산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제출년월일 1996. 11. 21.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의안 번호	119
----------	-----

1. 제안이유

가. 풍수해대책법이 '95.12.6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서산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내실있는 재해대책 업무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서산시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을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함 (안 제2조).
- 나. 서산시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협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재해기간에 필요한 경우 재해관련기관의 소속직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라. 기타 서산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본부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재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

서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재해대책본부(이하 "재해대책본부" 라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②통제관은 건설도시국장이되며, 담당관은 건설과장이되고, 실무반은 서산시 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자등으로 한다.

제3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인자(군부대의 경우 중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총경급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산시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서산시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서산시청
2. 서산경찰서
3. 군부대
4. 서산교육청
5. 서산우체국
6. 한국통신서산전화국
7. 한국전력공사서산지점
8. 서산기상대
9. 대산지방해운항만청
10. 기타 서산시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사항
3.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에 관한사항
4. 기타 서산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재해기간 파견근무) 서산시본부장은 재해기간(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직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서산시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되는 조례) 이 조례 시행전 서산시재해대책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